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8. 10 선고 2021가단7781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서경원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움 담당변호사 소리나

변 론 종 결 2022. 6. 8.

판 결 선 고 2022.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의 2018. 9. 28.자 10,000,000원의, 2018. 10. 1.자

1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간에 2016. 5. 25.과 2018. 4. 20. C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원고가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한도 9억 9,450만 원)을 체결하였고, B(피고의 부)은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C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 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28. D(B과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1억 8,000만 원(존속 중인 임대차의 보증금 1억 6,000만 원 포함)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현금 1,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그 돈이 D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피고는 2018. 10.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채권자가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9. 4. 25.과 2019. 5. 24. 합계 926,979,08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구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1. 21. 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8004, 그대로 확정).

라. 피고는 2020. 6. 16. 신규 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2020. 6. 29.부터 2022. 6. 28.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29. 그 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B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B으로부터 받은 매수자금 2,000만 원(승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제외)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B을 대위하여 그 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은 2018. 9. 28.과 2018. 10. 1. 피고에게 각 1,000만 원을 증여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증여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D과 B이 특별한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B의 계좌에서 일부 돈이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설불리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수자금을 전부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B이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광민